

옥천군 공고 제2019 - 692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자원순환시설)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4. 개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6, FAX : 043)731-3243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6조제3호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가. 공통사항	<p>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설별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및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 2차선 이상의 개설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주택수를 합산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에서 제외하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3.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4.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5.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6.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 시설을 말한다. 7. “도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도계장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8.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다목 및 제22호 가목 내지 마목에 따른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9.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나. 발전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 3.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주요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0㎡초과 20,000㎡ 이하시 직선거리 400미터, 20,000㎡초과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둘 이상의 필지를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는 해당 면적을 합산하여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보며, 토질형질변경면적 산정시 기허가 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p>또한 이격거리 산정시 부지경계로부터 30미터 이상 이격할 경우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는다.</p> <p>6. 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할 것(단,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p> <p>7.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p> <p>③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p> <p>④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우수유출량 산정에 맞게 U형플류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⑤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폐차장	<p>① 폐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p>2.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3.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4. 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5.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②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울타리)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한다.</p> <p>③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룸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p>
라. 도축시설	<p>비도시지역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3.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p>①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2. 저수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3.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4. 하천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5.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②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울타리)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한다.</p> <p>③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룸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p>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2019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도시교통과장 이 규 태
제출연월일	2019. . .

※ 심사 대상 제·개정안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규제심사 요청서

①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가. 옥천군 군계획 조례 제16조 제3항 별표24 신설
②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③ 규제목적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
④ 규제내용	가. 자원순환시설 등 주요도로 이격거리 제한 등 설치 기준 제정 (별표 24 신설 참고)
⑤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제한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분권에 따른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⑥ 규제의 존속기한	이 지침의 개·폐 때까지
⑦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의견없음
⑧ 첨부자료	가. 규제영향 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관련) 나. 자체심사 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 관련)

※ 제·개정안의 규제심사 대상 사무 건별로 작성

【첨부자료 1】

규제영향 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옥천군 군계획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옥천군 도시교통과 과장 이규태					
4. 근거법령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자원순환시설 사업자 - 지역주민					
6.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16조제3호 별표24) - 폐차장,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을 도로에서 200미터, 저수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하천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세부기준 신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제한을 조례에 신설하여 지방분권에 따른 지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해당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규제로 인한 발생 비용이 없으며, 규제로 인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이 압도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옥천군 군계획 조례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범위 등을 규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 요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주민의견 수렴

라. 집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 일부 주민들의 반발의 예상이 되지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후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결정

【첨부자료 2】

자체심사 의견서

1. 규제사무명	옥천군 군계획 조례
2. 규제내용	가. 자원순환시설 등 주요도로 이격거리 제한 등 설치 기준 제정 (별표 24 신설 참고)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	가. 사전의견조회 기간: 2019.5.31.~6.10 나. 대상 : 옥천군 주민 632명 다. 방법 : 다수인 건의제출 라. 결과 : 총632명 중 찬성(632명)
4. 자체심사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 내에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불허가 통지·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를 준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 후 의견수렴
5. 첨부자료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6조제3호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가. 공통사항	<p>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설별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 2차선 이상의 개설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에서 제외하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3.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4.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 시설을 말한다. 6. “도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도계장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7. “폐차장, 고물상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폐차장, 고물상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8.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나. 발전시설	<p>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요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0㎡초과 20,000㎡ 이하 시 직선거리 150미터, 20,000㎡초과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둘 이상의 필

	<p>지를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는 해당 면적을 합산하여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보며, 연접 개발 제한거리를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으로 한다.)</p> <p>4. 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할 것(단,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p> <p>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7.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려는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p> <p>③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p> <p>④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우수유출량 산정에 맞게 U형플류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⑤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주요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다. 폐차장, 고물상 등	<p>① 폐차장이나 고물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입하는 경우는 제외</p>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세대주 전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p>②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울타리)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한다.</p> <p>③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룸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p>
라. 도축시설	<p>비도시지역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 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생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생략>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 청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도시·군계획 조례 제(개)정 시 준수사항 알림

1. 관련 문서: 균형발전과-11695(2017.10.23.),-10701(2017.9.22.),-8857(2017.8.7.), -3660(2017.3.31.),-2986(2017.3.16.),-8983(2016.8.29.)

2.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정부 및 우리 도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이격거리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차질이 있는 현실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위한 도시·군계획 조례 제(개)정 시 이격거리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기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같은 제한내용을 조례로 제(개)정 추진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조례 제(개정) 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은 붙임 가이드라인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1부.

2.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도시계획과장), 충주시장(허가민원과장), 제천시장(지역개발과장), 보은군수(지역개발과장), 옥천군수(도시건축과장), 영동군수(도시건축과장), 증평군수(도시교통과장), 진천군수(지역개발건축과장), 괴산군수(지역개발과장), 음성군수(건축허가과장), 단양군수(균형개발과장)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균형정책팀장	대결 2018. 6. 5.	균형발전과장 전결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시행	균형발전과-5843	(2018. 6. 7.)	접수 도시건축과-33035	(2018. 6. 7.)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문화동)	/ www.chungbuk.go.kr	
전화번호	220-4136	팩스번호 043-220-4119	/ lee1226@korea.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충북, 충청북도 공직자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 시·군 태양광 발전사업 거리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

- 최근 시·군에서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입지 거리 제한 관련 지침으로 도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개선권고) 및 동법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와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개선권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입지 거리제한 규제 정비를 권고하오니
- 충청북도(관련부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시·군에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입지 거리 제한 관련 지침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 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입지 거리 제한 시·군 지침 조항 폐지
2.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의 입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 입지 예정지역 개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3. 부득이하게 시·군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한시적 운영
4. 조례 제정 등 규제 신설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 이행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2017. 3월

산업통상자원부

가. 목적

태양광 발전시설을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함

다. 예외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격거리(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직선거리로 계산함) 기준을 설정·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이격거리는 최대 1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음.
2. 도로(도로법상 도로에 국한)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
3. 문화재 등 기타 시설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

라. 예외의 적용 기한

다.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예외적 이격거리 기준은 2017. 3. 15. 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

마. 기타

1.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